

##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에 대한 小考<sup>+</sup>

박 종 탁\*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의 특징
  - 1. 이상적인 헌법 만들기
  - 2. 존중하지만 지키지 않는 법
  - 3.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 4. 직업으로서의 법률가 선호사상
- III. 나가며

### I. 들어가며

미주대륙은 캐나다와 미국 두 북미 국가와 멕시코 이하의 33개 중남미 국가들로 이루어진다. 후자를 흔히 라틴아메리카 또는 이베로아메리카라고 부른다.<sup>1)</sup> 이들 국가들은 서로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지만, 동

+ 본 논문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 (2007. 11. 22)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증보하고 각주를 붙인 것이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1)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 중 영어를 사용하는 카리브 해의 열 두 섬나라와 화란어를 쓰는 수리남을 제외한 명칭이 라틴아메리카이고, 불어사용국 아이티를 빼면 이베로

일한 국가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가 독립을 한 연고로 언어와 문화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말씨에서부터 풍속, 먹거리 등등이 다른 만큼, 국지적으로 보면 이들 나라 간에 너무나 많은 이질성과 차이를 발견하게 되지만, 굵게 보면 역시 동질성 내지 통일성을 발견하기 좋은 곳이 이베로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제도와 법문화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이 지역의 공통분모적인 법 문화에 대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해보려 한다.

## II.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의 특징

### 1. 이상적인 헌법 만들기

이베로아메리카는 19세기 초 독립 후 미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당시 가장 좋은 것만을 모아서 대단히 이상적인 헌법을 만든 셈이다. 독립과 혁명의 시대정신을 살리고, 공화제, 중앙집권제, 대통령중심제, 권력분립, 정치적 민주주의, 연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형 헌법은 이베로아메리카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의 관습과 문화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17년에 공포된 멕시코 혁명헌법은, 신앙의 자유와 정치-종교-교육의 분리 조항, 공리를 전제로 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자원의 국가귀속 원칙, 금융

---

아메리카가 된다. 서유럽 남단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이베로아메리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등등 열여덟 나라와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로 이루어지기에 라틴아메리카보다 좁은 의미이지만 영토면적, 인구, 경제규모, 국제적 위상 면에서 중남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포르투갈어권의 브라질을 뺀 나머지 열여덟 국가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로서 히스패닉아메리카에 속한다.

제도와 상거래의 개혁 등을 밝혔다. 나아가, 광범위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일일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취업을 금지하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제도와 노조와 단체 결성의 권리, 파업권을 명시하는 등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으로 평가되었다.<sup>2)</sup>

이러한 이베로아메리카의 헌법은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미국의 헌법이 7,500여 단어인데 반해, 멕시코의 헌법은 하위 법규에 답을 세부내용까지 언급하느라 45,000 단어가 넘는다.<sup>3)</sup> 이것은 이베로아메리카의 법 제도가 스페인의 법 전통을 물려 받아 이른바 로마-게르만법을 따르고, 로마-게르만법은 영국과 미국의 앵글로색슨 법 제도와 달리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이유이다. 거기에 완벽한 헌법을 만들려는 순수한 욕심이 가미되고, 심지어는 집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헌법에 보장해두려는 시도까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헌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베로아메리카의 사회적 낙후와 경제적 저발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깝게는 잦은 헌법 개정에서도 드러난다.<sup>4)</sup> 미국의 헌법이 18세기에 최초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27번 개정된 데 반해, 멕시코에서는 1917년의 헌법이 176차례의 개정과 446번의 조항 수정을 거쳤다.<sup>5)</sup> 이베로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잦은 정변 못

2) 임상래 외(1998), *중남미 사회와 문화*, 부산의대출판부, pp. 253-4

3) Luis Pazos(2007), *Inestabilidad Constitucional*, <http://www.luispazos.com.mx/?cat=13>

4) 이들 국가들은 공화국 체제의 수립 자체가 최대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헌법과 기본적 법령들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신생 국가들에서 헌법의 원칙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상이었다. 따라서, 신생 국가들은 헌법이 질서, 자유, 번영을 보장하여 주리라는 기대를 갖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이들의 헌법은 너무도 이른적이고, (주로) 미국의 헌법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의 현실은 미국과 너무나도 달라 그와 같은 헌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헌법은 자주 수정되거나 대체되었다.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73.

5) Luis Pazos(2007), op. cit,

지않게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것도 법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인데, 이베로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 대통령은 다방면에 걸친 막강한 권한 외에 헌법상의 모든 권리와 보장을 중단시키는 계엄선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헌법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페루 대통령에 당선된 후지모리가 92년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구정치인을 일소한다는 정치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의회와 사법부를 해산시킨 것이나,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의회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종신집권제를 꿈꾸며 헌법을 완전히 바꾸려 국민투표에 붙인 것이 그러한 예이다.

## 2. 존중하지만 지키지 않는 법

이베로아메리카에는 식민지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다. “법은 존중하지만 지키지 않는다”(La ley se acata, pero no se cumple.)는 것이다. 가령, 스페인 국왕은 원주민 인디오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흑인의 노예매매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지만, 식민지에서는 그런 법을 따르면 경제를 운용할 수가 없다고 여겼다. 인권보다는 탐욕에 눈이 먼 이런 불복종과는 다른 경우의 불복종도 있었다. 본국이 무역을 독점하고 식민지에서도 부왕청이 설치된 곳(중미에서는 멕시코)에 산업 활동에 있어 중심적 지위를 부여하다보니 온두라스나 니카라과 같은 변방은 법을 어기고서라도 광물과 염료를 개발하여 밀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sup>7)</sup> 그러면서도 이들이 몇몇하였던 것은 이른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6) 임상래 외(1998), op. cit., pp. 255-6.

7) Guillermo Nugent,(2005), *Las buenas costumbres y las malas leyes: un mundo en dos dimensiones* (texto aparecido en *La Trampa de la Moral Unica. Argumentos para una democracia laica*, Lima, 2005. Síntesis y edición de ENVÍO) <http://222.envio.org.ni>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독립 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베로아메리카인들은 법은 남들이 지키라고 있는 것일 뿐, 언제나 자기 자신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외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sup>8)</sup> 아무리 벌금을 무겁게 매긴다고 해도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넘쳐나고, 경고 문구를 비웃듯 쓰레기는 도처에 널려 있는 등 사소하고 일상적인 법규 위반에서부터 시작되는 준법정신의 실종은 조세 포탈,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베로아메리카의 수많은 자영업과 영세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인구의 경제활동을 지탱하지만, 등록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들은 법을 회피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는 셈이고, 국가는 재원이 없어서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되니 결국은 가난한 이웃에게서 훔치는 격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의 뿌리는 나쁜 법률과 잘못된 법 운용, 그리고 왜곡된 정치제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한데다가 뇌물까지 없어야 처리되는 등록 절차를 마치고 나면, 끈이끈대로 내고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증과세를 물어야 하니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 뇌물을 주고 해결을 하는 관행이 뿌리박히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좋은 관습, 나쁜 법(las buenas costumbres y las malas leyes)”이란 표현은 이베로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에르난도 소또라는 페루의 경제학자는 그의 유명한 책 『또 다른 사이길』(El Otro Sendero)에서 주장하길, 이베로아메리카의 낙후는 근본적으로 법과 규정의 과잉에 있으며, 이것들이 이베로아메리카인들의 기업의욕을

---

8) Pastor Fasquelle, Rodolfo(2007), *Las renunciadas de German y Soraya: fábulas para la posteridad*, <http://portal.rds.org.hn/listas/catrachos/msg11719.html>

질식시키고 있다고 한다.<sup>9)</sup> 이베로아메리카의 빈곤은 제국주의의 희생물도 아니고 자본가의 노동착취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소득의 정당한 분배라는 이름의 법과 규정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창업의 주요 장애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결책은 단 하나,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이 약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법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더욱 애를 쓴다. 처벌도 더 강화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조항도 추가한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갈수록 더 힘이 들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밑에서부터의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위로부터 공천을 받기 때문에 주로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법을 만든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있다. 실업률이 높아 값싼 노동력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제나 직원 채용에 있어 차별금지 조항을 지킬 필요가 작아진다. 가령, 멕시코에 들어온 다국적 기업들은 직원 채용 광고시 여성의 용모와 미혼 상태를 채용조건으로 내건다.<sup>10)</sup> 용모와 성별, 나이와 혼인상태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멕시코 노동법의 관련 조항이 시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베로아메리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베로아메리카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부패문화 역시 법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99년에 정치인의 재산신고법을 제정하였지만 실효를 못 거두는 것이 그 한 예이다.<sup>11)</sup> 관료주의의 관행이 법의 시행을 가로막기도 하는데, 페루에서는 2002년에 공공

9) Luis Pazos(2007), *Las malas leyes latinoamericanas*, <http://www.luispazos.com.mx/?cat=13>

10) 코리아타임즈, (뉴욕타임스특약-박봉현기자, 2006), *글로벌 미국 대기업들 멕시코에서 고용 차별*, <http://sf.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353466>

11) 이미숙 외(2001),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p. 58.

정보 공개와 접근에 관한 법을 만들었지만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대체로 이베로아메리카의 법은 이상적일 정도로 완벽하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마는 것이, 법의 집행을 받쳐줄 각종 소송법은 미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이베로아메리카에서는 아직도 법은 존중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라틴바로미터’라는 비정부기구(NGO)의 2005년 설문조사에 의하면,<sup>12)</sup> 준법정신에 대한 질문에 이베로아메리카인들은 평균 20%만 지키는 편이라고 답을 하고 있다(부록 표1 참조). 우루과이는 45%가 법을 지킨다고 답하여 이 부문에서도 일등을 차지하였고, 베네수엘라는 37%가 그렇다고 하여 차베스로 인한 국론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는 저력이 이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칠레는 36%로 3위에 올라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준법정신이 높다고 알려진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불과 7%만이 법을 지킨다고 하여 최하위로 처진 페루는 그 정치-사회적 무질서를 여실히 반영한다. 국가가 법을 준수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2004년에는 10점 만점에 4.5점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5.1점을 나타내 간신히 체면치레를 하게 되었다(표2 참조).

### 3.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이베로아메리카인들이 잘 쓰는 말 중의 하나가 “그건 옳지 않다” 혹은 “정당하지 못하다”(No es justo.)라는 말이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 그들은 끊임없이 항의를 하며 산다. 학생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옳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이 그토록 무자비하다는 것도 옳지 않아”, 서민들은, “누군 그렇게 많이 벌고 많이 써대고, 누군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건

---

12) Latinobarómetro 2005

옳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건 옳지 않아” 등등의 말을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때 이베로아메리카인들은 법이 세상의 불의를 얼마나 시정한다고 생각할까? 그들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을까?

‘라틴바로미터’의 2005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페인어권 17개 국가와 포르투갈어권 브라질을 포함하여 모두 18개 국가의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71%가 ‘전혀/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긍정적인 답은 26%에 지나지 않았다(표3 참조). 나라별로 통계수치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표4 참조),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가 46~47%대를 나타내는 데 반해, 비교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칠레에서는 20%에 머문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의 효과로 빈민들이 민주주의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칠레에서는 과거 피노체트 대통령 시절 군부독재의 만행과 과오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고, 또한 일반인의 높은 준법정신에 비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잦은 것으로 의심받기에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탓 때문으로 보인다. 역시 7~80년대 ‘더러운 전쟁’의 수행자인 군부를 준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지 못하는데다가 사법부의 부패가 심하고, 극도의 경제적 혼란마저 겪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법의 평등은 18%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인다.<sup>13)</sup> 오랫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려온 코스타리카는 3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미의 모범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

13) 아르헨티나의 군부는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면서도 독재 기간(1976~1982)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법(법률 23,492호-일명 ‘마침표법’ 와 23,521호-일명 ‘절대복종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법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왔으며(2003년 9월부터는 무효화됨: <http://www.legislaw.com.ar/legis/penal.htm> 참조), 칠레는 군부 독재(1973~1989) 시절에 군부에 의해 발생한 대량 실종자 문제에 관련된 경찰과 군인의 상당수를 법정에서 세웠으나 미온적인 처벌에 그쳤고 수피적인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예 칠레 국내 법정에서 세우지도 못하였다.



성에 비하면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사법 권력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는 이베로아메리카 18개국 평균 31%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우루과이가 51%로 가장 높고, 니카라과에서는 불과 15%만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는 나라는 우루과이를 포함하여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으로서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칠레에서는 일반 국민의 준법정신에 비해 법조인의 윤리성은 뒤떨어져 27%의 신뢰도를 얻고 있을 뿐이다. 칠레 사람들의 신뢰수준에 따라 직업을 나눠보면, 교회-경찰-대통령-기업인-언론인-군인-법조인-정치인-노조 순이다.<sup>14)</sup> 페루에서는 후지모리 대통령 시절 권력의 2인자인 몬테시노스가 판사의 대부분을 임시적으로 갈아치운 뒤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뒤집는 전횡을 일삼았는데, 이제 그런 일은 사라졌지만 아직 사법부의 신뢰도는 20%에 그치고 있다.

위의 결과처럼 이베로아메리카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식이 낮은 것은 한 마디로 법치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크게 나누어, 제도상의 문제, 잘못된 전통, 정책상의 소외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으로 보자면, 이베로아메리카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적은 근무시간에 느긋하면서도 꼼꼼하기 이를 데 없는 일처리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폭주하는 소송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개의 소송 사건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몇 년씩 걸리는데다가, 그만큼 소송비용도 늘어나므로, 서민들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호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법조인들간의 매수와 담합에 의해 정의의 심판이 왜곡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로

14) 이미숙, op.cit., pp. 117-8.

인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념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식민지 시대에 뇌물과 친분에 의해 법이 굽던 전통이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이다.<sup>15)</sup>

둘째, 권력과 재력을 법이 우대하는 오랜 전통이 건재하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는 “대도(大盜)는 법이 보호하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자는 감옥이 보호한다”(Ei fuero para el gran ladrón, la cárcel para el que roba un pan.)라고 꼬집은 바 있다. 역사적으로 호족(caudillo)들이 지방의 실질적 통치자로서 전횡을 일삼은 전통 때문에 아직도 사병조직을 거느리고 관료조차 부리는 세력가들이 존재하고, 군부 쿠데타의 위협 때문에 군부에게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덧붙여, 힘없는 시민은 가차 없는 처벌의 대상이지만 무리를 이루어 시위대랍시고 난동을 부릴 때는 공권력이 수수방관하는 것도 이베로아메리카적인 특징이다.

셋째, 반면에,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층인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정책의 중심대상도 아니고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권력과 부의 편중이 뚜렷한 곳, 즉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거나, 정규직으로 취직하거나,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법의 보호대상이라기보다는 법의 횡포 앞에 놓여지기 십상이어서 특히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많은 이베로아메리카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될 입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도시의 빈민 혹은 난민으로 살아가거나 시골에서 게릴라에 포섭되거나 마약을 재배하는 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아지나, 이베로아메리카의 감옥에 수감된 자들의 70%가 관선 변호사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수형생활을 한다.<sup>16)</sup> 이유는 첫째, 변호사들

15) Eugenio Chang-Rodríguez(2003), *라틴아메리카 문명과 문화*, 강태진 역,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pp.66-74.

16) Fernando Carrillo Flórez(2007), *Gobernabilidad y Sistemas de Justicia*, <http://>

이 관선 변호를 기피하기 때문이고, 둘째, 무성의한 변호나 변호사들간의 '승부조작' 때문에 관선변호를 피의자들이 강력히 요구하질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자들에게는 형법 대신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그러므로 이베로아메리카에서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사법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 경제 정의의 실현과 더불어,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증진되어야 하므로 결국 정치제도의 개혁과도 연관되어야 할 과제이다.

#### 4. 직업으로서의 법률가 선호사상

이러한 실정에 놓인 이베로아메리카에서 법률가는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의 하나이다. 권력의 후광을 얻은 일류 직업이긴 하지만 윤리적 이중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 이 지역에서 법은 오랫동안 대학 진학 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의 자리를 차지해 왔고 현재도 어느 정도는 그런 편이다.

이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언변도 필요하지만 필력이 뛰어나야 한다. 스페인의 법 전통을 이어 받아 철저한 성문법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증언 및 진정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송 절차가 문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들이 판사 앞에 나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곤 한다. 그 결과, 필력이 좋은 것이 변호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질로 꼽힌다.<sup>17)</sup>

식민지 시대가 지난 후에도 잦은 법률분쟁을 통하여 법률가는 일종의 편의품이라기보다는 필수품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www.iadb.org/sds/doc/sgc\\_Doc46-S.pdf](http://www.iadb.org/sds/doc/sgc_Doc46-S.pdf)

17) Daniel Balderston(ed.)(2000),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ultures*, Routledge, N.Y., p. 841.

역사적으로 정치계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중요한 자리마다 법률가가 포진되어 있다. 또한, 법 제도의 운용상의 한계와 허점을 잘 아는 변호사가 현실적인 분쟁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정 밖에서의 변호사의 수요는 상당히 큰 편이다. (각주: 멕시코인들은 법에 대해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에 호소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아무리 정당하고 힘이 있다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법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멕시코에서 변호사는 고객의 상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과대학은 사실상 변호사 공장처럼 되었고, 법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sup>19)</sup> 오늘날에는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변호사가 택시를 몰거나 길거리에서 사탕을 파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계를 훨씬 넘어선 법률시장에 해마다 수천 명의 법률가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실정이다.

이베로아메리카인들 사이에 이 직업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이미지는 위력적이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법률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도 법대 출신이지만, 카를로스 푸엔테스, 니콜라스 기엔, 가르시아 마르케스, 세사르 바예호, 후안 룰포,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 기라성 같은 이베로아메리카의 문인들이 자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 하에 법학을 전공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sup>20)</sup>

18) 임상래 외(2002), 비즈니스스페인어, Leccion 14. <http://www.bizspanish.net>

19) 이미 식민지 시대에도 변호사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신대륙으로의 이주를 통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스페인왕에게 올리곤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분쟁과 부정을 조장하였기 때문이다. Eugenio Chang-Rodriguez, op. cit., p. 71.

### Ⅲ. 나가며

이상으로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짚어보았다.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보다 이상적이기만한 법을 만드는 전통, 법을 존중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회적 관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현실, 시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아도 직업으로서는 선호되는 법률가 등은 중남미적인 후진성과 혼란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들이다. 이런 특징들이 이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나,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베로아메리카가 후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부터 무한한 가능성의 대륙이라고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일어서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외적, 내적으로 다양할 것이다. 가령, 무한경쟁시대에 산업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외적 요인의 한 가지라면,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못하여 만연된 부패 속에서 국민의 신뢰와 의욕이 만성적으로 꺾여 있는 것은 내재적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무를 깊이 인식하기 시작한 이베로아메리카는 지금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호기를 맞아 자원 부국인 이 지역이 병리적인 법 문화를 고쳐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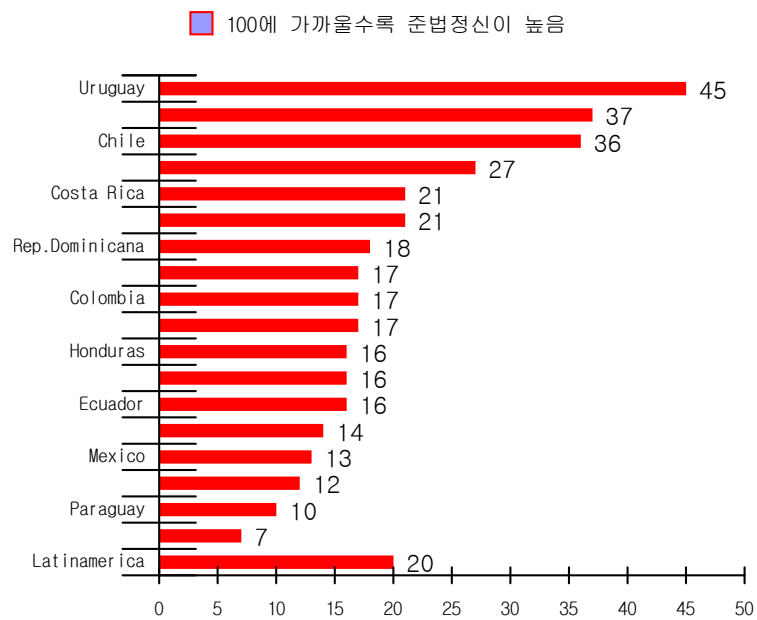
---

20) Daniel Balderston(ed.), op.cit., pp. 841-2.

부록:

[표 1]

### 시민의 준법정신(국가별 2005)



출처: Latinobarometro 2005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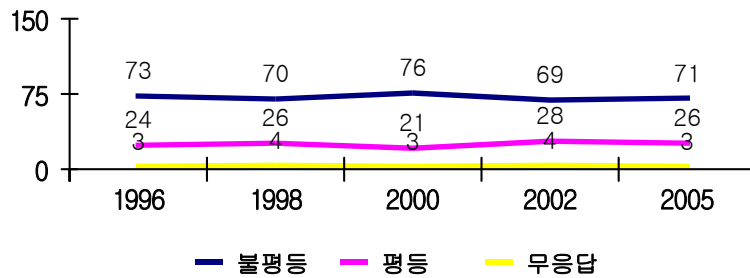
법의 권위(이베로아메리카 2004-2005)



출처: Latinobarometro 2004-2005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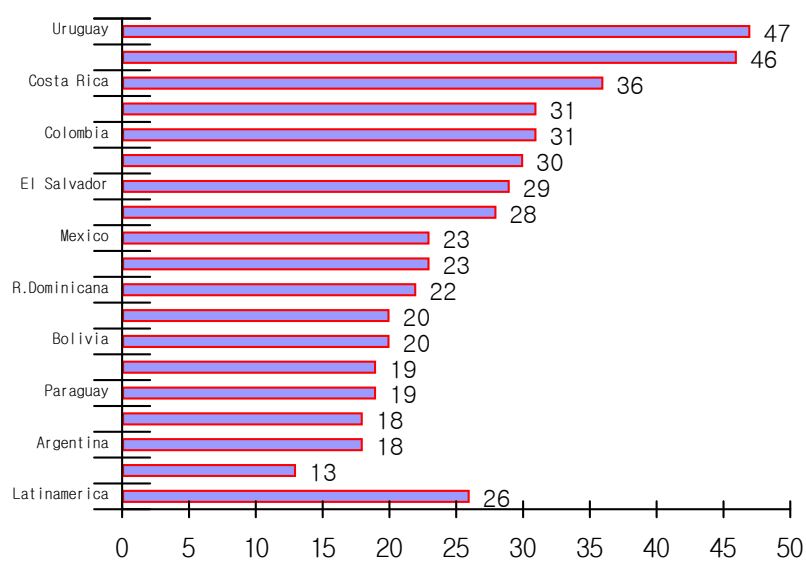
법 앞에 평등(이베로아메리카 1996-2005)



출처: Latinobarometro 1996-2005)

[표 4]

법 앞에 평등(국가별 2005)



출처: Latinobarometro 2005



## 참고문헌

- 임상래 외(1998), *중남미 사회와 문화*, 부산외대출판부.
- 이미숙 외(2001),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Chang-Rodriguez, Eugenio (2003, 강태진 역), *라틴아메리카 문명과 문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Daniel Balderston(ed.)(2000),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ultures*, Routledge, N.Y.
- Carrillo Flórez, Fernando(2007), *Gobernabilidad y Sistemas de Justicia*, [http://www.iadb.org/sds/doc/sgc\\_Doc46-S.pdf](http://www.iadb.org/sds/doc/sgc_Doc46-S.pdf)
- Pazos, Luis(2007), *Inestabilidad Constitucional, Las malas leyes latinoamericanas*, <http://www.luispazos.com.mx/?cat=13>
- Nugent, Guillermo(2005), *La Trampa de la Moral Unica. Argumentos para una democracia laica*, Lima, 2005. Síntesis y edición de ENVÍO) <http://222.envio.org.ni>
- Lucia Pinzón, Martha(2007), *Constituciones latinoamericanas: aportes y perspectivas*, [http://americas.fiu.edu/Commentators/Martha\\_Pinzon/pinzon\\_94\\_spa.pdf](http://americas.fiu.edu/Commentators/Martha_Pinzon/pinzon_94_spa.pdf).
- Alarcón, Francisco(2007), *Se acata, pero no se cumple*, <http://articulosfalar.blogspot.com>
- Pastor Fasquelle, Rodolfo(2007), *Las renunciadas de German y Soraya: fábulas para la posteridad*, <http://portal.rds.org.hn/listas/catrachos/msg11719.html>
- Banco Jurídico Argentino, El, <http://www.legislaw.com.ar/legis/penal.htm>

*Informe Latinobarometro 2005* <http://www.latinobarometro.org>

임상래 외(2002), *비즈니스스페인어*, <http://www.bizspanish.net>

코리아타임즈, (뉴욕타임스특약-박봉현기자. 2006), *글로벌 미국 대기업  
들 멕시코에서 고용 차별*, [http://sf.koreatimes.com/article/  
articleview.asp?id=353466](http://sf.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353466)

국제인권연맹보고서(2005), *멕시코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  
향*, (기획 번역: 자유 무역기업, 노동권을 밝고 서다) [http://www.  
sar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125](http://www.sar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125)

**Abstract**

Observations on some of the Ibero American  
cultures of the law

Park, Chong-Tark

The Ibero American countries speak Spanish except Brasil, and have the same or similar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owing to their colonial heritages of Spain or Brasil. Though there are so many differences between them, we find as many same characteristics in various fields. As far as the law is concerned, we can extract some common denominators: elaborating an idealistic and advanced Constitution,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irrespective of their reality; succeeding to the tradition «La ley se acata, pero no se cumple(The law must be obeyed but not complied with.)» that makes a law degrade to be just nominal; not believing that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because the judicial system has been selective, eliminating and discriminatory; and still preferring to be a lawyer in spite of a chronic excess of them. With these pathological phenomena, I have tried to explain the Ibero American cultures of the law in this article. Nowadays Ibero Americans are well aware of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ir judicial system, but it would not be feasible if they do not root up their problematic cultures of the law.

Key Workds : Ibero America/ law and customs/ law-abidingness/  
equality before the law/ 이베로아메리카/ 법과 관습/  
준법/ 법 앞에 평등